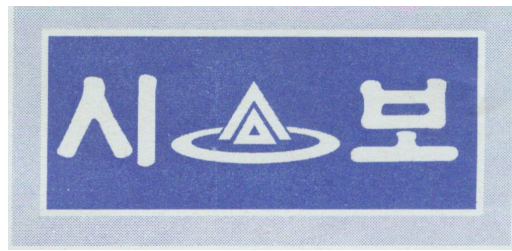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448호 2012. 2. 15.(수)

【조 례】

- 제799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
- 제800호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 19
- 제801호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21
- 제802호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고 시】

- 제2012-12호 2012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인가 고시 37
- 제2012-13호 중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시행계획고시 38
- 제2012-15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50

【공 고】

- 제2012-11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 공주대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 53
- 제2012-124호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재분양 공고 56
- 제2012-128호 대부업자 소재지확인 공시송달공고 60
- 제2012-131호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61
- 제2012-134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 일반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선별시설)> 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 70
- 제2012-137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73
- 제2012-143호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85

회 람							
--------	--	--	--	--	--	--	--

공주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2. 2. 6.)
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2년 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799 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공간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에 대해 주 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현업부서”란 도로기반시설물 사업 및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며, 공간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설치·관리부서 및 공간정보관련 부서를 말한다.
5. “관계기관”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의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구축 대상기관을 말한다.
6. “주 전산기”란 정보를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스템으로 입·출력장치를 포함한다.
7. “단말기”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
8.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 제2조와 제8조에 따른 도로(제7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를 포함)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제129조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9. “갱신”이란 도로기반시설물사업(신설, 보수, 이전, 폐기 등) 및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인해 변동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 관리 시스템에 맞게 추가, 삭제, 교환 등을 하고 새로운 내용의 공간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10. “도형정보”란 각 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레스터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도면 및 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1. “속성정보”란 각 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2. “도시기준점”이란 위성측지기준점 및 삼각점을 기지점으로 하여 도시내 평지에 설치하여 측량할 때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가기준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 공공측량성으로 고시된 공공기준점을 말한다.
13. “도로기반시설물사업”이란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 변경, 철거 등의 변동을 유발하는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
14. “통합관리시스템”이란 관리기관과 관계기관이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정보를 조회, 열람, 출력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공간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5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가 택지개발사업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도로개설 등의 인가·허가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한 후 시설관리 주체가 시로 이관되는 경우에도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간정보의 활용)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 산림, 공원, 도시계획, 교통시설물, 재난재해예방, 지적관리, 각종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공간정보사업의 추진체계

제5조(공간정보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시 공간정보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 사업계획 제출)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현 업무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 말까지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범위
3. 사업의 기대효과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문서 등

제7조(호환성 확보) 시장은 관계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투자 방지) 전담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에 대하여 중복성, 연계성, 기술표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운영협의회

제9조(설치)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활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간정보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 기본계획과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운영과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수치지형도의 제작, 갱신 및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의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한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
2.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안건제출 및 심의) ① 시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과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6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담부서의 공간정보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7조(회의록) ①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심의 안건과 내용
4. 심의 결과와 건의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의 자료관리 및 운영

제18조(업무지정) 시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현업부서 및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 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와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관리) ①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 발생시점은 사업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며, 현업부서와 관계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도형과 속성자료 등)의 갱신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담부서

에 갱신자료를 제공하여 시스템 자료가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와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자료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전산파일의 부분(백업자료)을 복제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전산파일이 파손된 경우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21조(도로기반시설물도의 작성과 수정)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 준공 후 15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 자료 변동통지서를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처리기한까지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사에게 제공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가 완료된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시공사로부터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받은 서류가 전담부서의 장을 경유하였는지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도로기반시설물은 시와 관계기관이 통합관리체계를 함께 구축하여 유지·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관계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한다.

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 갱신은 관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자료를 15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관인 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도시기준점 활용과 관리) ① 현업부서에서는 수치지형도 제작과 지형, 지물의 변경을 유발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지역 내 설치된 도시기준점이 훼손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년 확인·관리하고 측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및 이용

제24조(공간정보의 공개) 시장은 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③ 공간정보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수증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하며, 별지 5호 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어 공간정보 자료제공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④ CD와 파일형태로 제공되는 공간정보는 불법복제와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라벨(LABEL)을 붙여 제공한다.

제26조(자료제공의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신청 자료 중 지하시설물도 등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7조(수수료 징수방법) ①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수수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시 수입증지로 한다.

③ 수수료는 자료제공 승인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28조(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에 사정이 변경되어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9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자료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보안과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전산실의 모든 시설, 공간정보 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간정보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한 시
공간정보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간정보 자료제공 수수료 (제27조제1항 관련)

종 류	금 액	비 고
○ 수치지도(1/1,000) 벡터 데이터 (Vector Data)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	
○ 출력도면 - 수치지도(1/1000) - 수치정사사진 (1/1000)	”	해당 축척이 없는 경우 근접한 축척 적용

[별표 2]

공간정보 자료제공 수수료 감면율 (제29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100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따라 지하시설물 설치·계획·시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단, 도형과 속성자료를 전산자료로 전담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0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100
공주시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100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50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학술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과 연구기관장이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되는 경우	5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 자료 변동통지서 (제21조제1항 관련)

사 업 구 분	신규(), 변경(), 증설(), 폐지(), 그 밖의()
사 업 명	
사 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기 간	
현업부서 및 업 무 담 당 자	
사 업 시 공 자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 붙임 1. 전산파일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 1부

[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 (제25조제3항 관련)

본인(기관)은 공주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음에 있어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자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음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며 모든 보안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가.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나. 제공받은 공간정보가 사용 중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오류 또는 보안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공주시에 지체 없이 알린다.
- 다. 제공받은 공간정보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편집하거나 불법으로 복제, 복사하여 상업목적이나 제3자 등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 라. 제공받은 공간정보 자료는 사용 후 반납 또는 파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기관)에게 있다.

년 월 일

서약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공주시 공간정보 자료제공 (제25조제4항 관련)

- 관리번호:
- 수령기관:
(수령인:)
- 제공기관: 공주시 ○○○

- 자료등급:
- 제공자료:
- 자료형태:
- 제공일자: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 복사할 수 없음

(예고문)
용역준공에 따라 자체파기 후 공문통보 또는 CD만남 원칙

공주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2. 2. 6.)
에서 의결된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2년 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800 호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
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
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2. 2. 6.)
에서 의결된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2년 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801 호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 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
려는 자를 말한다.
3.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변동계수를 산출하여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과 부지 매입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가. 소각시설: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 폐기물량을 뺀 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하며,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는 1.3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하며,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는 1.3을 적용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 면적의 규모

가. 소각시설: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 면적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 면적” 이란 가연성폐기물(유기성폐기물은 제외)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1톤당 1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 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1톤당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가. 소각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소각용량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주민편익시설과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주민편익시설과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서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4.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제곱미터 당 택지조성원가에 제2호에 따른 부지 면적을 곱한 금액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1. 비용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부대비용 포함)

2. 타 자치단체의 설치비용 산정 결과

3. 그 밖에 설치비용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된 자료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 시행 인가·허가 또는 승인서 사본
2. 납부금액의 산출 자료

제6조(부과·징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3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8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조에 따른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납부금액을 납부한 납부의무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주민편익시설과 부대시설 포함)와 부지매입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약정 체결된 시 금고에 기금을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주사
- ③ 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금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사업 선정 등 모든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담당관, 도시과장, 환경과장, 청소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착공된 주택단지조성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기금관리대장 (제10조제3항 관련)

(단위: 원)

연월일	예 금					인 출		잔 액
	재 원	예금종류	금 액	이 율	기 간	적 요	금 액	

[별지 제4호 서식]

기금출납부 (제10조제3항 관련)

(단위: 원)

연월일	적 요	수입액 (A)	지출액 (B)	잔 액 (A-B)	결 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공주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2. 2. 6.)
에서 의결된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2년 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 802 호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라”로, “사람은”을 “자는”으로 하
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온라인 예약시스템에 의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중 “허가함에 있어서”를 “허가하는 경우”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할 때”를 “해당 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파손할 때”를 “파손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할
때”를 “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정할 때”를 “인정하는 경
우” 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할 때”를 “해당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전단 중 “요청한 때”를 “요청한 경우”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때에는 50%이내”를 “경우에는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용함에 있어”를 “사용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비로 해당금액”을 “실제 비용으로 해당 금액”으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숙박·체험장 영농재 사용료 (제8조 관련)

시 설 별		정원(명)	사용요금(원)	비 고
안 채	방 1	2	25,000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인원한도: 15명 이하 · 방/규모: 10m ² · 부역: 공용
	방 2+대청	4	60,000	
	방 3+대청	6	85,000	
사랑채	방 1	2	25,000	
	방 2	4	50,000	
안채+사랑채	방 5+대청	10	135,000	

비고: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숙박·체험장 영농재 시설사용권 (제6조 관련)

1. 사용자 현황

사용시설	사용자 대표		사 용 인원수	비 고
	성 명	주 소		

※시설구분 : 안채(방 3), 사랑채(방 2), 농가체험시설(○○)

2. 사용일시: 20 . . . : ~ . . . :

3. 사용요금표

시 설 별		정원(명)	사용요금(원)	비 고
안 채	방 1	2	25,000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인원한도: 15명 이하 • 방/규모: 10m ² • 부역: 공용
	방 2+대청	4	60,000	
	방 3+대청	6	85,000	
사랑채	방 1	2	25,000	
	방 2	4	50,000	
안채+사랑채	방 5+대청	10	135,000	

※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문화 체험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주시 농업문화 체험시설인 영농재의 <u>운영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운영에</u> ----- -----.</p>
<p>제5조(사용허가) ① (생략)</p> <p>② <u>제1항의</u>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u>신설</u>></p>	<p>제5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라</u> ----- <u>자</u>는 ----- ----- . <u>다만,</u> <u>온라인 예약시스템에 의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같음할 수 있다.</u></p>
<p>③ (생략)</p> <p>제6조(허가조건 등) 숙박·체험장의 사용을 <u>허가함에 있어서</u> 소장은 시설사용권(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허가조건 등) ----- ----- <u>허가하는 경우</u> ----- ----- -----.</p>
<p>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할 때에는</u>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p>	<p>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 ----- <u>해당 할 경우</u> ----- -----.</p>

현행	개정안
<p>1.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시설물을 고의로 <u>파손할 때</u></p> <p>2. (생략)</p> <p>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u>할 때</u></p> <p>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부적당하다고 <u>인정할 때</u></p> <p>제9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할 때에는</u>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을 <u>요청한 때에는</u> 전액 반환한다. 다만 1일 이내(사용일 12시 기준)에 취소할 때에는 <u>50%이내</u>에서 반환할 수 있다.</p> <p>제10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또는 숙박·체험용품을 <u>사용함에 있어</u>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숙박·체험용품을</p>	<p>1. ----- ----- <u>파손한 경우</u></p> <p>2. (현행과 같음)</p> <p>3. ----- ----- <u>한 경우</u></p> <p>4. ----- ----- <u>인정하는 경우</u></p> <p>제9조(사용료의 반환) ----- ----- ----- <u>해당할 경우</u>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u>요청한 경우</u> ----- ----- ----- <u>경우</u> ----- ----- <u>에는 50퍼센트 이내</u> ----- -----.</p> <p>제10조(손해배상) ① ----- ----- <u>사용하는 경우</u> ----- -----.</p> <p>② ----- -----</p>

현행	개정안
<p>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u>실비로</u> 해당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p>	<p>----- ----- <u>실제 비용으로</u> <u>해당 금액</u> -----.</p>

고 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인가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공 주 시 장

사업명	지구명	위 치		사업량 (km)	총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업효과
		면	리				
2012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 업	계	7	지구	7.8	936,000		기계화영농 기반 구축 및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가척	탄천	가척	1.4	168,000	‘12.2월 ~ 12. 30일	
	월가	사곡	월가	0.9	108,000	“	
	화월	사곡	화월	1.0	120,000	“	
	호계 해월	사곡	호계 해월	1.1	132,000	“	
	계실	사곡	계실	1.0	120,000	“	
	목천	우성	목천	1.4	168,000	“	
	신영	유구	신영	1.0	120,000	“	

중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시행계획고시

하천법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2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중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하천재해예방 사업 추진
 - 개 요 : 축제 및 호안공 L=3.815km, 교량3개소(금흥6교, 금흥7교, 금흥8교)
배수공 16개소, U형 측구 L=2,379m, 자연형여울형 보3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공주시 금흥동 542 ~ 장기면 송선리 642-20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공주시장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2012. 2 ~ 2015.12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관리에 관한 명세 : 별첨
 - 토지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재난관리과 비치
7. 실시설계도서 : 공주시 재난관리과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사업비-연차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12,000	800	1,780	4,000	4,000	1,420

9. 공사에정공정 : 2012.02 ~ 2015.12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명 : 중산천 (지방하천)

- 위치 및 사업규모 : 상기와 같음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면적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재난관리과 (☎840-28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편입용지조사

일련번호	소재지 군.면.리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계	토지대장		비고
						주소	소유자현황	
1	공주시 금흥동	542	천	42554	8,194	국(건설부)		
2	공주시 금흥동	194-1	답	3,432	76	신관동 5 공나루아파트 101-802	유영자	
3	공주시 금흥동	542-24	천	3,116	2,885	건설부		
4	공주시 금흥동	154-2	전	327	326	금흥동 42	이진하	
5	공주시 금흥동	156	답	1,607	105	청양군 목면 송암리 55-1	권혁성	
6	공주시 금흥동	574	답	253	7	재정경제부		
7	공주시 금흥동	154-1	전	595	595	금흥동 42	이진하	
8	공주시 금흥동	155-2	답	2,562	62	금흥리 512	신재철	
9	공주시 금흥동	155-1	답	4,448	738	중동 50-5	박영일	
10	공주시 금흥동	155-5	대	183	60	중동 50-5	박영일	
11	공주시 금흥동	02월 09일	대	1,515	76	신관동 613-1 현대아파트 202-1503	이치하	
12	공주시 금흥동	40-2	답	81	75	신관동 613-1 현대아파트 202-1503	이치하	
13	공주시 금흥동	39-1	천	496	101	서울 중구 남창동 205-38	이맹수	
14	공주시 금흥동	36	전	3,471	557	금흥동 78	이익주 외3인	
15	공주시 금흥동	35-1	천	1,137	688	금흥동 35-6	이익주 외1인	
16	공주시 금흥동	545	도	6,257	245	건설부		
17	공주시 금흥동	Feb-00	천	565	291	금흥리 78	이정숙 외13인	
18	공주시 금흥동	542-27	천	834	111	건설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면적	토지대장		비고
						소유지현황		
						주소	성명	
19	공주시 금흥동	542-28	천	294	160	간설부		
20	공주시 금흥동	237-1	전	40	16	송선리 592	전주이씨덕천군중산문중	
21	공주시 금흥동	553	구	519	7	농수산부		
22	공주시 금흥동	552	도	20	1	간설부		
23	공주시 금흥동	542-43	천	1,064	10	간설부		
24	공주시 금흥동	9-1	천	2,823	1,546	금흥리 78	이정숙 외 13인	
25	공주시 금흥동	9-2	잡	159	37	금흥리 78	이정숙 외 13인	
26	공주시 금흥동	542-40	천	340	2	간설부		
27	공주시 금흥동	542-42	천	2,209	250	간설부		
28	공주시 금흥동	542-41	천	955	392	간설부		
29	공주시 금흥동	542-29	천	504	224	간설부		
30	공주시 금흥동	542-32	천	585	356	간설부		
31	공주시 금흥동	8	천	853	512	산성동 187-18	이찬주 외 1인	
32	공주시 금흥동	542-31	천	2,649	906	간설부		
33	공주시 금흥동	542-44	천	125	72	간설부		
34	공주시 금흥동	5-2	천	627	31	사곡면 해월리 51-9	가정건	
35	공주시 금흥동	182	도	50	8	충청남도		
36	공주시 금흥동	546	구	16,672	78	농수산부		
37	공주시 금흥동	542	천	42,554	19,065	국(간설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토지대장		비고
						소유지현황		
						주소	성명	
	군.면.리				(㎡)			
38	공주시 금흥동	542-21	천	176	2	국(건설부)		
39	공주시 금흥동	542-22	천	1,523	692	건설부		
40	공주시 금흥동	179	답	2,902	0	산성동 186-41	정의철	
41	공주시 금흥동	178	답	1,617	377	유성구 송강동 200-4 한마을아파트 112-1107	정기해	
42	공주시 금흥동	178-2	답	185	185	공주시		
43	공주시 금흥동	542-25	천	601	28	건설부		
44	공주시 금흥동	192-1	천	180	131	공주시		
45	공주시 금흥동	192	답	81	11	정안면 내문리 194	권병학	
46	공주시 금흥동	542-23	천	1,754	1,754	건설부		
47	공주시 금흥동	157	답	440	385	신관동 312-23 신라이파트 101-108	이윤주	
48	공주시 금흥동	560	도	1,339	561	건설부		
49	공주시 금흥동	153	답	4,205	1,287	영주시 영주동 379-19	김민석	
50	공주시 금흥동	547	구	10,112	69	농수산부		
51	공주시 금흥동	545	도	6,257	952	건설부		
52	공주시 금흥동	28	답	3,283	1,582	신관동 246-2	서청모	
53	공주시 금흥동	562	제	2,658	2,577	건설부		
54	공주시 금흥동	29-2	답	1,729	305	신관동 248-6	이종현	
55	공주시 금흥동	30-2	답	1,339	201	금흥리 56	이용호	
56	공주시 금흥동	32	답	1,636	205	금흥리 79	이정남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면적	토지대장		비고
						소유지현황		
						주소	성명	
57	공주시 금흥동	33-1	답	3,855	433	금흥리 65	이용달	
58	공주시 금흥동	34	천	565	279	금흥리 78	이정숙 외13인	
59	공주시 금흥동	11-4	도	185	22	공주시		
60	공주시 금흥동	11-5	도	25	4	금흥리 78	이봉주	
61	공주시 금흥동	544	제	3,084	1,223	농림수산부		
62	공주시 금흥동	9-1	천	2,823	1,190	금흥리 78	이정숙 외13인	
63	공주시 금흥동	10-7	답	946	39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70-5 301호	임재욱	
64	공주시 금흥동	10-8	답	595	338	안양시 호계동 977 주공아파트 202-206	임지현	
65	공주시 금흥동	542-32	천	585	236	건설부		
66	공주시 금흥동	542-30	천	1,447	9	건설부		
67	공주시 금흥동	542-49	천	1,312	604	건설부		
68	공주시 금흥동	543-3	답	232	29	재정경제부		
69	공주시 금흥동	4-4	창	906	107	금흥리 4-2	이은자	
70	공주시 금흥동	8	천	853	125	산성동 187-18	이찬주 외1인	
71	공주시 금흥동	542-31	천	2649	989.29	국(건설부)		
72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47	천	1,245	69	건설부		
73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3	답	1,626	278	건설교통부		
74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48	천	2,492	1,619	건설부		
75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78	전	637	496	충청남도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면적	토지대장		비고
							소유자현황		
							주소	성명	
	군.면.리				(㎡)	(㎡)			
76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548	천	512	185	월송리	이현구		
77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128	전	124	124	충청남도			
78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549-1	천	2,391	840	재무부			
79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136	전	27	27	금흥동 53-3	이은채		
80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134	전	231	156	금흥동 53-3	이은채		
81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76	전	430	289	금흥동 53-3	이은채		
82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74	천	585	243	충청남도			
83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75	답	952	950	웅진동 신32-10 경일아파트 나-104	이하나 외3인		
84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135	답	2,351	498	장기면 송선리 361	허권		
85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127	천	76	72	충청남도			
86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71	전	369	101	장기면 송선리 361	허권		
87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126	답	194	192	충청남도			
88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72	전	147	145	충청남도			
89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125	전	175	160	충청남도			
90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124	천	51	25	충청남도			
91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69	대	405	82	장기면 송선리 361	허권		
92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68	전	172	109	장기면 송선리 361	허권		
93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40	천	10,384	1,401	건설부			
94	공주시 금흥동	5-2	전	627	85	사곡면 해월리 51-9	가정권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대장		비고
							소유지현황		
							주소	성명	
	군·면·리				(㎡)	(㎡)			
95	공주시 금흥동	542-31	천	2,649	753	간설부			
96	공주시 송선리	642-48	천	2,492	721	간설부			
97	공주시 송선리	536-1	전	83	70	공주시			
98	공주시 송선리	708	구	174	43	농수산부			
99	공주시 송선리	536-3	전	21	5	장기면 금흥리 238		이명주	
100	공주시 송선리	549-2	답	681	479	공주시			
101	공주시 송선리	548	천	512	313	월송리		이현구	
102	공주시 송선리	549-1	천	2,391	956	재무부			
103	공주시 송선리	549-4	도	251	10	간설부			
104	공주시 송선리	706	도	1,993	41	간설부			
105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549-1	천	2391	604	재무부			
106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706	도	1,993	182	간설부			
107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549-3	도	7	4	재무부			
108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552-3	전	517	308	공주시 금흥동 78		이한주	
109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552-2	도	139	54	간설부			
110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40	천	10,384	4,612	간설부			
111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707	구	2,493	138	농수산부			
112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552-1	대	432	5	공주시 금흥동 78		이한주	
113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554-8	답	3,210	332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587-1		전주이씨내청파문종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대장		비고
							소유자현황		
							주소	성명	
	군.면.리				(㎡)	(㎡)			
114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119	답	352	134	금흥동 68	이평주		
115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93	답	1,316	345	금흥동 81	이능주		
116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92	전	747	646	금흥동 81	이능주		
117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560	천	628	599	금흥리	이두하		
118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83	전	63	62	금흥동 81	이능주		
119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84	답	208	139	금흥동 81	이능주		
120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561	전	783	384	대전 서구 정림동 639 우성@ 116-1203	신현기		
121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51	답	1,460	804	대전 서구 정림동 639 우성@ 116-1203	신현기		
122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6	답	2,160	1,070	옥룡동 272-11	변상숙		
123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36	천	300	998	간설부			
124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38	답	161	205	충청남도			
125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37	답	1,050	1,018	충청남도			
126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6-2	답	1,856	249	동현리 206	최정식		
127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5-2	전	684	176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152	김철영		
128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9-2	답	761	160	서울 관악구 신림동 748-5	이석주 외2인		
129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1-3	천	299	115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152	김철영		
130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1-4	천	9	9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152	김철영		
131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9-1	답	2,542	61	광명시 하안동 260 고충주공@ 805-209	이은종		
132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28	천	676	459	간설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대장		비고
							소유지현황		
							주소	성명	
	군.면.리				(㎡)	(㎡)			
133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2-1	천	110	108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217	이은조		
134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2	천	19	19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217	이은조		
135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32	천	575	575	건설부			
136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2-2	천	436	337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217	이은조		
137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31	천	53	52	건설부			
138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3	답	1,286	899	광명시 하안동 260 고흥주공@ 805-209	이은종		
139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29	천	86	86	건설부			
140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0-3	천	438	165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217	이은조		
141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26	천	564	235.85	건설부			
142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0-4	천	48	48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217	이은조		
143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27	천	522	26	충청남도			
144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42	답	1,149	64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104	이은양		
145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25	답	291	91	중학동 137-7	이은양		
146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29-1	천	259	257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104	이은양		
147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29-2	천	238	137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104	이은양		
148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29	답	155	99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104	이은양		
149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1	천	2,808	33	건설부			
150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11	제	1,176	5	건설부			
151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29-6	천	37	21	건설교통부			

일련번호	소재지 군·면·리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면적	토지대장		비고
							소유지현황		
							주소	성명	
152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29-5	답	325	17	건설교통부			
153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40	천	10384	2,707	건설부			
154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81	답	1,682	403	신관동 312-29		임재신	
155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133	답	1,682	702	옥룡동 103 옥룡주공@2단지 203-302		이상복	
156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42	천	109	83	건설부			
157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130	답	109	88	충청남도			
158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88	도	716	268	건설부			
159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562	천	2,230	2,230	동부면 송곡리		조종구	
160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52	천	449	9	장기면 송선리 248		한수일	
161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53	천	271	38	충청남도			
162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58	천	120	56	장기면 송선리 248		한수일	
163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57	답	1,026	1	충청남도			
164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4-3	답	1,223	361	공주시 반죽동 169		윤석환	
165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4-1	천	546	1,179	송선리 152		김범주	
166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4-2	천	542	119	보령시 명천동 389 주공5차@ 324-402		이은우	
167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4-4	천	455	447	송선리 152		김범주	
168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5-2	천	684	499	송선리 152		김철영	
169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34	천	734	186	신관동 180-5 대동다숲아파트 106-1102		김범부	
170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5	천	5	5	송선리 152		김철영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면적	토지대장		비고
							소유지현황		
							주소	성명	
		군.면.리			(㎡)	(㎡)			
171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5-1	전	35	35	35	송선리 152	김철영	
172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39	천	2	2	2	건설부		
173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1-1	천	29	29	29	송선리 152	김철영	
174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1-2	천	396	388	388	송선리 152	김철영	
175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1-3	천	299	202	202	송선리 152	김철영	
176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1	전	1,169	1,169	1,169	송선리 152	김철영	
177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21	전	296	1,069	1,069	신관동 108-5 대동다숲아파트 106-1102	김범주	
178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28	천	676	210	210	건설부		
179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30	천	125	125	125	건설부		
180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2-2	천	436	96	96	송선리 217	이은조	
181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1-5	천	78	78	78	송선리 152	김철영	
182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0	천	53	50	50	송선리 217	이은조	
183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0-2	천	154	154	154	송선리 217	이은조	
184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0-3	천	438	280	280	송선리 217	이은조	
185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30-1	천	34	30	30	송선리 217	이은조	
186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20	천	299	194	194	건설부		
187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29-2	천	238	108	108	송선리 104	이은양	
188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1	천	2,808	181	181	건설부		
189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642-103	전	180	74.75	74.75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우리시 의당면 청룡리 221-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부지내 「골드리버CC 1단계 확장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과(☎041-840-854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221-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 명 칭 : 골드리버CC 1단계 확장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골프장)	175,764 (금회 154,598)	○ 골프장 확장공사 (세부내용 공람도서 참조) -골프장 증설 : 6홀→9홀 ※1단계 사업에 한함

라. 사업시행자 : (주)웅진 대표 권영기

마. 사업기간 : 2012. 2(인가일) ~ 2013. 12.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자

순번	토지소재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의 내용 및 종류			비고
	면	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내용 및 종류	
1	의당	청룡	200	체	73	73	주식회사 웅진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설정	1단계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지상권 설정		
2	“	“	200-2	체	7	7	주식회사 웅진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설정	1단계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지상권 설정		
3	“	“	201-1	체	16	16	주식회사 웅진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설정	1단계
4	“	“	220-2	체	7,094	7,094	주식회사 웅진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설정	1단계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지상권 설정		
5	“	“	220-3	체	365	365	주식회사 웅진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설정	1단계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지상권 설정		
6	“	“	220-8	체	3,300	3,300	주식회사 웅진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설정	1단계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지상권 설정		
7	“	“	221-2	체	131,334	131,334	주식회사 웅진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설정	1단계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지상권 설정		
8	“	“	225	체	7,156	7,156	주식회사 웅진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설정	1단계: 7,130㎡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지상권 설정	2단계: 26㎡	

순번	토지소재			지목	지적면적 (㎡)	면적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의 내용 및 종류			비고
	면	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내용 및 종류	
9	“	“	233-1	체	524	524	주식회사 웅진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1단계
10	“	“	234-1	전	84	84	김종숙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306-4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설정	1단계
11	“	“	219-4	답	25	25	이정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57-19 싸이언스빌 5-20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설정	1단계
12	“	“	219-1	답	1,512	1,512	이정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57-19 싸이언스빌 5-201				1단계
13	“	“	220-9	답	293	293	주식회사 웅진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1단계
14	“	“	산43	임	21,521	21,521	주식회사 웅진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1단계: 381㎡ 2단계: 21,140㎡
15	“	“	684	구	3,847	1,967	국	농수산부				1단계
16	“	“	685	구	1,153	450	국	농수산부				1단계
17	“	“	699	도	543	42	국	건설부				1단계
18	“	“	700	도	1,134	1	국	건설부				1단계
합계			18필지		179,981	175,764						

● 공주시 공고 제2012 - 116호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교) 부지내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신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2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교)
 - 명 칭 :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신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학교:대학교)	356,337 (금회 7,350)	○ 대학본부, 재활용품분류장 신축공사 (세부내용 공람도서 참조) -대학본부:건축면적(1,648.03㎡) -재활용품 분류장:건축면적(140.00㎡)

4. 사업시행자 : 공주대학교총장
5. 사업기간 : (인가일) ~ 2015. 12. 31
6. 공람기간 : 2012. 2. 15 ~ 2012. 3. 6(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과 (☎ 041-840-8548)
신관동사무소 (☎ 041-840-2137)
8.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식

의견 제출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의견제출내용】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재분양 공고

우리시에서 조성·분양중인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분양 공고합니다.

2012. 02. 15.

공 주 시 장

1. 산업단지 개요

- 단 지 명 :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185-1번지 일원
- 면 적 : 95,910.9㎡ (산업단지 87,789.8㎡, 신국도32호 8,121.1㎡)
-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
-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공영개발)

2. 재분양공고 목적 : 유치업종 변경에 따른 분양계획 변경

3. 금회분양대상 (잔여필지)

위 치	용 도	블록수 (필지수)	분양면적 (㎡)	평균분양 예정가격	분양방법
유구읍 백교리 일원	산업시설용지	9블록	30,011	62,244원/㎡ (필지별 차등적용)	일반분양

4. 공고기간 : 2012. 02. 15 ~ 2012. 03. 01(15일간)

5. 신청서 접수 및 입주일정

- 신청기간 : 2012. 02. 15부터
- 신청방법 : 신청기간내 아래 제출서류를 공주시청 도시과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분양신청서(우리시 소정양식)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공장등록증명서 1부.(등록공장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 관할세무서가 확인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용도:용지매입신청용) 1부.
- 접수 및 문의처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공주시청 도시과 (☎041-840-8558)
- 입주자격심사, 입주업체선정, 계약체결 등 기타 일정은 입주신청 업체에 추후 개별통보 예정

6. 입주대상업종 (현재 입주완료된 획지는 제외)

구 분	면 적(m ²)	업체수	비 고
합 계	30,011	9	
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134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제조업에 한함)	8,230.1	3	
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134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외) 28. 전기장비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제조업에 한함) 32. 가구제조업	21,780.9	6	

7. 입주제한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5의 폐수배출 관련 업종
- 사전환경성검토서상 입주제한 업종

8. 입주자격

- 공고 당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

9. 입주우선순위

- (1) 공주시 유구읍에 소재한 업체
- (2) 공주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
- (3) 전국에 소재한 업체
-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5) 기타 권장업체
 -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
 - 지역주민 우선고용, 상시 고용인원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
 - 품질경영 및 기술우수기업, 수출 등 유망중소기업, 재무구조 건실기업으로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
 - 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또는 수출업체
 - 동일업종의 경우 투자비율이 높은 업체

10. 분양대금 납부방법

구 분	비 율	납 부 시 기	납 부 방 법
계 약 금	10%	입주계약시	고지서 납부 (납부처 - 전국 우체국, 농협 및 공주시 관내 금융기관)
중 도 금	40%	입주계약시로부터 6개월이내	
잔 금	50%	입주시	

※ 분양대금 완납시 소유권 이전하며, 납부기간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 규정에 의거 연체료 부과(연12%~연15%)

11. 세제 혜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의 규정에 의거 조세 감면
- ※ 위 사항은 해당 관련 법률에 따라 감면되며 재정여건 및 세제 변동시 조정될 수 있음.

12. 기타 유의사항

- 입주계약을 체결한자가 다음 각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
 - 입주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허위서류 제출 등 입주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된 때 또는 계약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
 - 입주계약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입주계약 후 처리
- 공장을 건축 후 정상 가동하지 아니한 자가 입주계약이 해지된 때에 계약금은 우리시에 귀속됨
 - 공장정상 가동 중 공장을 부득이 매도하게 되는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
 - 신청자격이 없거나 허위 기타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우리시에 귀속됨
 - 「공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건축물의 착공전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공주시에 납부하여야 함
 -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에 의거 건축물의 준공이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공주시에 납부하여야 함
- 신청인은 신청전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사항,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 공고문, 입주계약서, 용지매매계약서,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 분양계약 신청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입주자가 분양받은 후에 처분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야 하며, 임의 양도·처분할 수 없음
- 업종별 배치계획도 및 제출서류는 공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 참조 (공주시청 홈페이지 ☞ www.gongju.go.kr)
- 본 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 분양계획은 공주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게재 생략하며, 분양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함.

대부업자 소재지확인 공시송달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대부업 영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검사결과,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3조제2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2. 15

공 주 시 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자 소재지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2. 2. 15. ~ 2012. 3. 15.
3. 공 고 대 상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비 고
1	2009-충남공주-대부6	현대금융대부	신동민	충남 공주시 신관동 638-7	

4. 공 고 내 용

- 가. 위 대부업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통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통지가 없을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이 취소되며, 동법제4조에 의거 대부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이 제한됩니다.

- 대부업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대부업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041-840-2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2011.12.21) 됨에 따라,
-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급식경비 지원계획 확정 및 지원체계(안 제2조~제3조)
- 급식경비 지원방법 및 신청절차(안 제4조~제5조)
- 친환경급식지원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 9명 이내 구성, 친환경 급식지원 실무 협의
- 급식경비 집행결과 정산(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시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 주소 : (우)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 시정담당관)
- 연락처 : 전화 041) 840-2055 FAX 041) 840-283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 확정)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 급식경비 지원 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급식 지원계획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체계)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친환경 급식 예산으로 확정된 친환경 급식 지원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지원대상자에게,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그 밖의 시설은 직접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② 친환경 급식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통지된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구입 사용하되,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급확인서를 발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4조(지원방법) 지원대상자는 친환경 급식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내에서 식재료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5조(신청절차)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친환경 급식 경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급식지원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급식지원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주시 친환경 급식지원 업무담당자 1명
2.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자 1명
3. 공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추천자 1명
4. 유치원 대표자 1명
5. 영양교사 2명 이내
6. 학부모 대표자 2명
7. 급식관련 시민 대표자 1명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의 사전협의 등 친환경 급식 지원 실무를 협의한다.

제7조(집행결과 정산)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산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정산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정산결과 집행 잔액을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 급식 식재료비 지원계획 (제3조제1항 관련)

(단위: 명/천원)

학교별 (시설별)	학생수 또는 이용인원			지원금액 확 정	비 고
	계	급 식 학생수	비급식 학생수		

※ 위원회 심의내용 등 세부 시행계획은 별도 시달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제3조제3항 관련)

지 원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액	공급기관 또는 시설명	공급 기간	식재료 공급내역			공급 식재료 중 친환경농산물 또는 음식재료 공급내역			지급신청 금 액 (원)
			품목	수 량 (kg)	금액 (원)	품목	수 량 (kg)	금액 (원)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또는 음식재료를 친환경 급식 식재료로 공급하였기에 공급 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상호:

성명:

(인)

학교(시설)장 귀하

※ 구비서류 : 공급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친환경 급식 경비 보조금 정산서 (제7조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학교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합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합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합 계	도 비	시군비

사업비 집행액 상세내역

(단위 : 천원)

학교명	집행액	식재료비 집행내역							비고	
		계	친환경 농산물 또는 음식재료		축산물		우수 국내산	일반 국내산		수입산
			쌀	기타	1등급	기타				

잔액발생 사유(자세히 기술)

※ 필요시 이면으로 작성 요

년 월 일

제출자 ○○○ 학 교 장 (인)

공주시장 귀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 일반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선별시설)》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

공주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 일반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선별시설)》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2. 2. 13

공 주 시 장

1. 공람 및 의견서 제출기간 : 2012. 2. 13 ~ 2012. 3. 5
2. 공람 장소 : 공주시청 청소과(☎ 041-840-2179), 도시과(☎ 041-840-8547)
이인면사무소(☎ 041-840-2602)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12. 3. 5
- 제출처 : 공람 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4. 공람 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3	이인면 운암리 폐기물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이인면 운암리 164번지 일원	-	증)9,447	9,447	-	선별시설

나.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이인면 운암리 폐기물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선별시설) 신설 A=9,447㎡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처리 공정을 갖춘 선별시설에서 처리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5. 기 타

- 가. 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 일반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선별시설)》결정(안)은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며 본 계획(안)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 나. 향후 행정절차(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행 중 본 도시관리계획 공람 공고내용과 다르게 결정 될 수 있으며, 공람장소에서 필사 및 사진촬영은 금지합니다.
- 다. 관련 도면은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청소과 청소시설담당(☎041-840-2179) 및 도시과 도시계획담당(☎041-840-85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식

의견 제출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의견제출내용】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조례안 입 법 예 고

1. 개정이유

-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2. 2. 6일 제1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원안가결 의결됨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 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이루며
- 신규 발생하는 인위적인 시설물 사업에 대하여 준공시 전자도면 제출과 공간정보 생산자료(전산매체)작성등 그에 해당하는 시스템내 탑재 운영 및 부서별 업무와 공간정보의 자료 제공등을 규정함으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미비점을 전부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전부 개정내용>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업무지정, 안 제3조 단말기 설치, 안 제4조 담당자의 지정, 안 제5조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 안 제6조 자료의 갱신, 안 제7조 도시기준점, 표지못의 설치 및 관리, 안 제8조 공간정보의 제공, 안 제9조 보안 및 안전대책을 정함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토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토지과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전화: 041-840-8475

팩스 : 041-840-2275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지정) ①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전담부서, 현업부서 및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부서

- 가. 공간정보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 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 라.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시행
- 마. 프로그램 개발 및 주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 바.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 사. 공간정보 자료제공 및 수수료 징수

2. 현업부서

-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자료 갱신
- 나. 공간정보의 구축·갱신 시 전담부서에 통지

3. 계약부서는 현업부서의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시 공간정보 변동자료 등록 및 전담부서에 변동통지서와 전산성과품(DXF 및 Shspe)제공 확인후 공사대금 지출

제3조(단말기 설치) ① 현업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단말기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구사항 및 설치장소 등을 검토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담당자의 지정) ① 전담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 관리 및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에 정보관리 담당자와 시스템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관리 담당자가 시스템관리 담당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② 현업부서의 장도 정보관리 담당자와 시스템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정보관리 담당자 또는 시스템관리 담당자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관련 교육 및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 ① 전담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점검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갱신) ① 시공자는 도시기반시설물사업 완료시 현업부서에 준공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갱신된 전산파일을 1부 출력하여 전담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받은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시기반시설물사업 준공시 도형 및 속성자료 등에 대한 공간정보의 갱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도시기준점, 표지못의 설치 및 관리)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현업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사업 추진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설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표지못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이 변경되는 경우
2. 지하시설물이 교차 또는 분기되는 경우
3. 지하시설물이 곡선구간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기준점, 표지못 등이 도로포장 공사 등으로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서 재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제8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을 신청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 제공 여부 및 자료 제공일 등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처리기한은 별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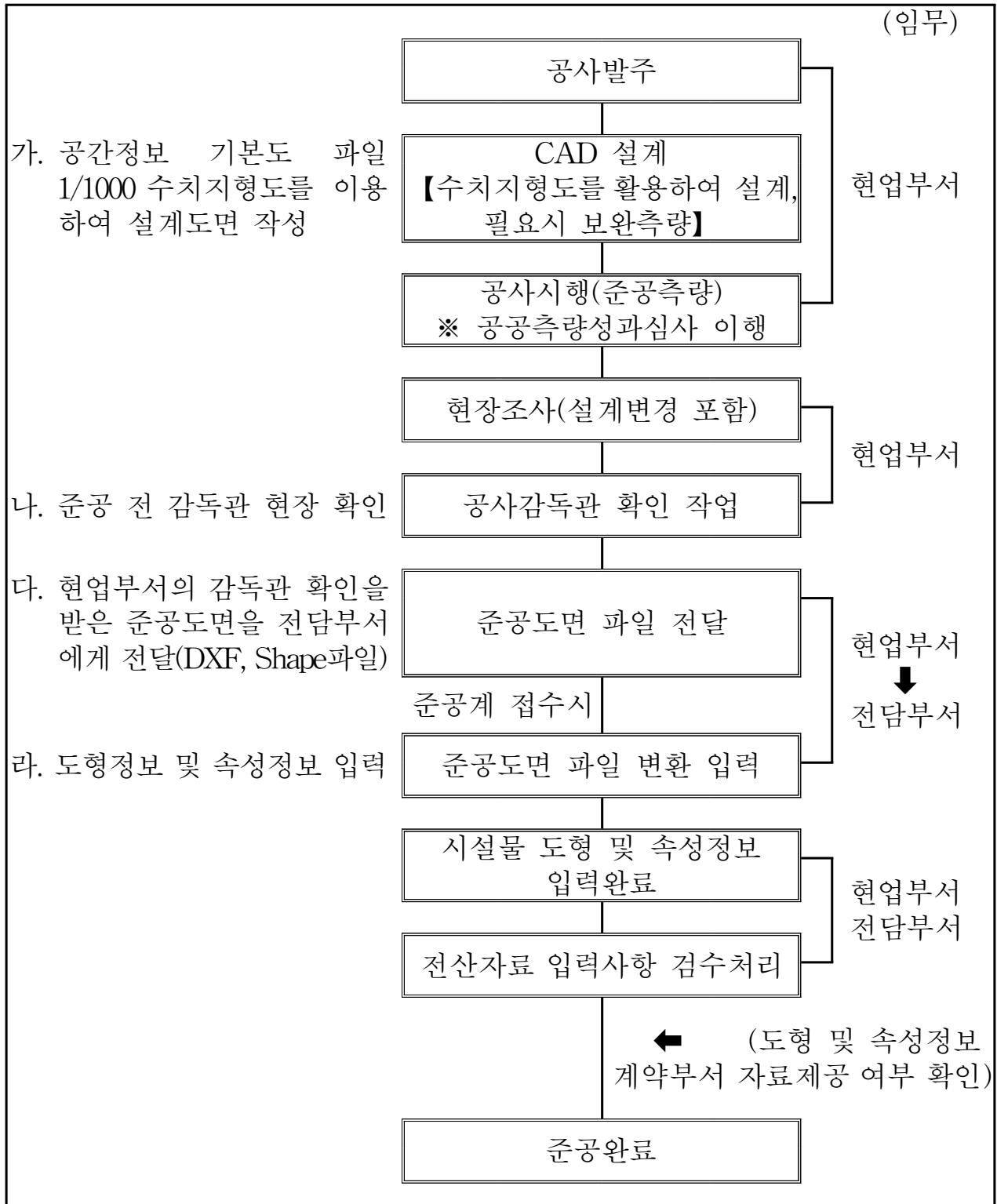
- 제9조(보안 및 안전대책) ①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전산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는 비밀취급인가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시스템별, 단말기별, 개인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인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산자료 및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제4조제1항 따라 지정된 정보관리 담당자 및 시스템관리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업무권한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 ④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전산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자 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공간정보 전산실 출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기반시설물사업 준공도면에 따른 공간정보 갱신 절차 (제6조제3항 관련)



[별표 2]

공간정보제공 처리기한 (제8조제4항 관련)

구 분		처리기한	비 고
도면	10매 이하	7일	
	11매 이상 20매 이하	10일	
	21매 이상	15일	
CD/파일		14일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제5조제1항 관련)

① 장애발생날짜	년 월 일 시 분
② 장애발생업무명	
③ 장애처리시기	
④ 사 용 자	
⑤ 장 애 발 생 내 용	
구 분	내 용
장애발생 상황	업 무 명
	장애내용
	발생경위
조치사항	
확인사항	

[별지 제2호 서식]

공간정보시스템 점검부 (제5조제2항 관련)

연월일	이상유무	조치사항	점검자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접수증 (제8조제1항 관련)

접수증(보관용)	접수증(민원인용)
1. 접수번호: 제 호	1. 접수번호: 제 호
2. 접수 일:	2. 접수 일:
3. 신청 명: 공간정보 발급, 열람, 그 밖의()	3. 신청 명: 공간정보 발급, 열람, 그 밖의()
4. 신청 인:	4. 신청 인:
5. 처리예정기한:	5. 처리예정기한:
6. 처리부서:	6. 처리부서:
7. 그 밖에 안내사항	7. 그 밖에 안내사항
○ 대리인이 수령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수령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공주시장

[별지 제5호 서식]

공간정보 전산실 출입대장 (제9조제4항 관련)

날짜	출입시간		출 입 자				용무	결 재		
	부터	까지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부서장

공주시 공고 제2012 - 143호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서식 등 세부 세항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조례에서 위임한 주요내용>

- 제안의 제출 및 심사 · 채택에 관한 서식(조례 제4조, 11조)
- 채택된 제안의 실시 · 평가에 관한 서식(조례 제12조, 30조)

가. 제안의 제출 및 접수 방법 (안 제3조)

나. 제안 심사기준 등 (안 제4조)

다. 불채택 제안 재심 요청 방법 (안 제6조)

라. 채택제안의 실시 방법 (안 제7조)

- 마. 제안실시평가서 제출 방법 등 (안 제8조)
- 바.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 방법 (안 제9조)
- 사.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안 제10조)
- 아. 제안관리 기록 및 결과보고 (안 제11조, 제12조)
- 자. 공주시 제안규칙 폐지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기획담당관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 041) 840 - 2038 FAX : 041) 840 - 279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제안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아이디어·실시·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분담 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붙임자료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안(제6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 및 조례 제14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 여부 및 창안등급 결정을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심사평가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안 내용의 관계부서가 2개 부서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제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을 따른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안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며,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창안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세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른 산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해당 제안의 실시예 투입된 경비는 공제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제안관리 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공주시제안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제4조 관련)

심사항목	검토할 사항	배 점					득점
		25	20	15	10	0	
실시가능성 (25)	· 제안의 실현 가능 정도는 어떠한가?	25	20	15	10	0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이다	약간 있다	없다	
창의성 (25)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25	18	10	5	0	
		획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효율성 및 효과성 (20)	· 인력, 시간, 비용 등 의 투입에 대한 행 정개선 효과는 어 떠한가?	20	15	10	5	0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이다	약간 있다	없다	
적용범위 (15)	· 전 행정기관 등에 적용할 수 있는가?	15	12	9	6	3	
		다수 행정기관 적용	일반 행정기관 적용	소수 행정기관 적용	소속 행정기관 적용	소속 부서 적용	
계속성 (15)	· 제안실시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가?	15	12	9	6	3	
		5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총 계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제5조 및 제6조 관련)

등 급	심사자 평균점수
채 택	70점 이상
불채택	70점 미만

[별표 3]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 (제10조 관련)

심사항목	기여도 및 점수					득점
	수	우	미	양	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	수	우	미	양	가	
	35	28	21	14	7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	수	우	미	양	가	
	35	28	21	14	7	
파급효과 (10점)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지속적인 추진여부 (10점)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시 행정발전 기여도 (10점)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종합평가점수	/	/	/	/	/	
등 급	/	/	/	/	/	

<비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창안상여금 지급기준표상 “행정 개선”에 대한 수·우·미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미”로 한다.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서 (제3조제1항 관련)					
수 신:					
제안제목: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공 동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⑦ 조치사항	▪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그 밖에()

< 작성요령 >

- ① 제안제목: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 ② 제안종류: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 ③ 개 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 성과가 나타난 날짜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 하고, 그 밖에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3조제1항 관련)		
제안자	기여도(%)	업무분담내용

[별지 제3호 서식]

제안 접수대장 (제3조제2항 관련)

접수 번호	접수 날짜	제 목	제 출 자		제안 종류	채택 등급	부상금 지급액	비고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성 명				

[별지 제5호 서식]

심사평가서 (제4조 관련)										
접수 번호	제 목	총계	심사기준 및 점수						심사의견	비고
			소계	실시 가능성 (25)	창의성 (25)	효율성 또는 효과성 (20)	적용 범위 (15)	계속성 (15)		

평가자 직위 : 성명 :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재심요청서 (제6조제1항 관련)

수 신:

제안제목

접수번호

제안종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성 명

주소 또는
소속·직급
(직위)

(재심요청 사유)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7호 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7조제1항 관련)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별지 제8호 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제8조제1항 관련)

실시부서명:

제안제목					
제안종류			채택연도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공동 제안자					
실시자					
실시 성과 평가	최초 실시날짜		효과측정 기간		
	측정기간	실시내용	예산절감액	시세·세외 수입 증대액	행정개선효과
	~				
	~				
	~				

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

[별지 제9호 서식]

제안실시평가서 (제8조제1항 관련)

수 신: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창안등급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공동 제안자							
실시자							
보 상	인사상 특전			부 상 금			
제안 평가	최초 실시날짜				효과측정기간		
	효과	구 분	•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금액 또는 개선실적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							

제안관리기록부 (제11조제1항 관련)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창안등급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전화번호		
공동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전화번호		
실시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기여도(%)		비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상	포상종류		인사 특전 부여	종류	
	부상금			날짜	
제안실시	실시날짜		실시근거		
	실시여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실시내용					

(뒤쪽)

실시성과 평가	측정기간	예산 절감액	국세·조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과
	~			
	~			
	~			
	~			
상여금 지급	예산절감액		국세·조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과			
	상여금 지급액		지급날짜	
권리의 국가승계	종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날짜	
	등록번호		등록날짜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년) (제12조 관련)

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

(단위: 건)

접 수					채 택					충청남도 추천
계	시민 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 제안	공모 제안	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2. 부상금 지급 현황

창안등급	제안자 (실시자)	제 안 제 목	지급액 (만원)	비고
계				

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	창안등급	제안자 (실시자)	제 안 제 목	지급액 (만원)	지급 날짜
계					

(뒤쪽)

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	창안 등급	제안자	제안제목	인사상 특전의 종류	실적 가점	특전부여 날짜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	창안 등급	제안자 (당시직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	창안 등급	제안자 (직급)	제안제목	실시날짜	비고

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	창안 등급	제안자 (직급)	제안제목	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